

『經國大典』의 편찬·반포와 초주갑인자본 관련 초기 판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Gyeongguk Daejeon*
and of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and Other Early Editions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을사대전』의 판본 |
| 2. 『경국대전』의 편찬 | 4.1 초주갑인자본 |
| 2.1 『경국대전』의 편찬 배경 | 4.2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
| 2.2 『기축대전』의 편찬 | 4.3 초주갑인자변각본 |
| 2.3 『신묘대전』 및 『갑오대전』의 편찬 | 5. 결 론 |
| 2.4 『을사대전』의 편찬 | <참고문헌> |
| 3. 『을사대전』의 구성과 내용 | |

<초 록>

이 글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간행과 초주갑인자본 관련 초기 판본에 관한 연구이다. 『경국대전』의 편찬 배경은 세조가 선대왕들이 편찬한 『원육전』, 『숙육전』과 『육전등록』 및 왕이 내린 교지들이 있었는데, 법의 과(科)와 조(條)가 너무 많아 이를 조정하여 증감하고 회통하여 자손만대의 성법을 만들려고 한 데서 시작되었다. 『기축대전』은 예종 1년(1469) 11월 16일에 반포된 『경국대전』의 초간본이다. 성종 1년(1470) 『경국대전』의 수정판인 『신묘대전』과 성종 4년(1473) 『갑오대전』이 시행되었으며, 성종 16년(1485)에 『경국대전』의 완성본 『을사대전』이 시행되었다. 『을사대전』의 구성은 중국의 법전인 『주례』의 형식에 따라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 29목, 『호전』, 29목, 『예전』, 61목, 『병전』, 51목, 『형전』, 28목, 『공전』, 14목의 총 212목이다. 성종 16년(1485) 『을사대전』은 교정청이 주도하여 편찬하였고, 간행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문헌상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초주갑인자 활자본인 것으로 미루어 교서관 또는 주자소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을사대전』의 저본은 현재 성종 1년(1470) 11월에 인반하고 성종 2년(1471)에 정월부터 준행된 『신묘대전』의 판본 형식인 ‘사주단변, 반곽 25.5 × 17.2 cm, 대자 10행17자, 주쌍행, 상하내향흑어미’의 형태사항과 같고, 초주갑인자 활자도 같다. 중종~명종 연간(1506-1567) 『을사대전』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권1-권3이, 성암고서박물관에 권5-권6이 남아 있다.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마멸된 큰 자 활자들은 획이 가늘어지고 활자 획이 휘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너무 가늘어진 부분은 먹색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새로 주성된 큰 자 활자들은 가로획과 세로획이 길어지면서 밋밋해져서 글자 획의 필서체 느낌이 줄었다. 어떤 글자는 가로획이 길어져서 명정한 글자체의 흐름이 깨졌다. 초주갑인자변각본은 성종 16년(1485)에 간행본을 저본으로 하여 성종 16년 이후 성종 25년(1486-1494)에 간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본 『을사대전』 권1(고6025-59, 780)이 남아 있다. 초주갑인자변각본의 큰 자 활자들은 초주갑인자의 모양을 그대로 닮았지만 목판이어서 필사체의 느낌은 둔탁해졌다. 특히 가로획필법, 파임 필법, 중획의 갈고리 획에서 뾰뚱하고 칼로 도각한 느낌이 나타난다. 이 연구는 향후 서지학, 역사학, 한국학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경국대전(經國大典)』, 『기축대전』, 『신묘대전』, 『갑오대전』, 초주갑인자본,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초주갑인자변각본

* 본 연구는 2017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8년 11월 3일 최초심사일: 2018년 12월 5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5일
서지학연구, 제76집, 105-134,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105]

<ABSTRACT>

This paper is the study of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Gyeongguk Daejeon* and of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and other early editions.

The compilation of *Gyeongguk Daejeon* began with King Sejo attempting to create a code of law for future generations by revising, modifying numbers and interpreting the overly many departments and sections of law in the previous kings'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Wonyukjeon, Sokyukjeon, Yukjeondeungrok and regal doctrines. *Gichuk Daejeon*, distributed on November 16 in the year Yejong became king (1469), was the first publication of *Gyeongguk Daejeon*. The edited editions of *Gyeongguk Daejeon* were carried out as *Sinmyo Daejeon* in the 1st year of Seongjong (1470) and as *Gabo Daejeon* in the 4th year of Seongjong's reign (1473), while the complete edition Eulsa Daejeon was carried out in the 16th year of Seongjong's reign (1485). Eulsa Daejeon follows the format of Chinese code of law The Rites of Zhou in being comprised of six codes. There is a total of 212 articles (目): 29 "Ijeon" articles, 29 "Hojeon" articles, 61 "Yejeon" articles, 51 "Byeongjeon" articles, 28 "Hyeongjeon" articles, and 14 "Gongjeon" articles. Compilation of the Eulsa Daejeon of the 16th year of Seongjong's reign (1485) was led by the Gyojeongcheong, but no literary record remains of where it was published. However, the First Cast Type being in a printed book makes it probable that it was published in the Gyoseogwan or a typefoundry. The original edition of Eulsa Daejeon has the same form details as *Sinmyo Daejeon* which was printed and distributed in November in the 1st year of King Seongjong's reign (1470) and followed in the first month of Seongjong's second year (1471): the same sajudanbyeon ban-gwak of 25.5 × 17.2 cm; daeja 10-stanza 17-character; jussanghaeng; sangha-naehyang-heukeomi; and the First Cast Type. Volume 1 to Volume 3 of the First Supplement Cast of Gapinja Type of the annual Eulsa Daejeon from Jungjong's to Myeongjong's reign (1506-1567) is housed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hile Volume 5 to Volume 6 of the edition are in the Sung Am Archives of Classical Literature. The worn out large types in the First Supplement Cast of Gapinja Type have thinning strokes, sometimes bending, and some of the thinning strokes show unclear ink color. The newly formed large types of the First Supplement Cast of Gapinja Type have horizontal strokes and vertical strokes elongated and thus made bland, lessening the appearance of the pilsa type. In certain characters the horizontal strokes have been elongated, breaking the clear flow of the letter type. The Reprint of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based itself on the published edition in King Seongjong's 16th year of reign, and was published from the 16th to the 25th year of King Seongjong's reign (1486-1494). Volume 1 of Eulsa Daejeon is housed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large types in the Reprint of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resemble those of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 in shape, but being as they are carved in wood the appearance of the pilsa type is blunted. In particular, the horizontal strokes, right-falling strokes and ending hook strokes appear as if they were carved with a kn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as future basic (research) material in bibliography, history, and Korean studies.

Key words: *Gyeongguk Daejeon*, *Gichuk Daejeon*, *Sinmyo Daejeon*, *Gabo Daejeon*,
First Cast of Gapinja Type, First Supplement Cast of Gapinja Type,
First Reprint Cast of Gapinja Type

1. 서론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성종 16년(1485)에 완성된 최고의 성문 법전이다.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 『육전(六典)』의 서록(序錄)의 성격을 지닌 법전으로는 태조 6년(1397) 조준(趙浚)의 『경제육전(經濟六典)』, 태종 13년(1413) 하륜(河崙)의 『경제육전속전(經濟六典續典)』, 세종 11년(1429) 이직(李穡)의 『신속육전(新續六典)』, 세종 15년(1433)의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이 편찬되었고, 이때마다 『육전등록(六典謄錄)』도 편찬되어 법전 편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¹⁾ 이때 편찬된 법전들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경국대전』의 편찬은 세조 즉위년(1455) 이후 성종 16년(1485) 『을사대전』이 완성될 때까지 30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편찬되었다. 세조 6년(1460) 7월 「호전(戶典)」, 세조 7년(1461) 7월 「형전(刑典)」, 세조 13년(1467) 7월 29일에 「이전(吏典)」·「예전(禮典)」·「병전(兵典)」·「공전(工典)」이 보완되어 『육전』의 체제를 갖춘 『경국대전』의 초안이 완성되었다. 세조 14년(1468) 정월에 「호전」과 「형전」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였다. 예종 1년(1469)에 『경국대전』의 초판 「기축대전(己丑大典)」(『경국대전』의 초판 「기축대전」은 이하 「기축대전」으로 칭함)이 시행되었고, 성종 1년(1470) 『경국대전』의 수정판 「신묘대전(辛卯大典)」(『경국대전』의 수정판 「신묘대전」은 이하 「신묘대전」으로 칭함)과 성종 4년(1473)에 『경국대전』의 수정본 「갑오대전(甲午大典)」(『경국대전』의 수정본 「갑오대전」은 이하 「갑오대전」으로 칭함)이 시행되었으며, 성종 16년(1485)에 『경국대전』의 완성본 「을사대전(乙巳大典)」(『경국대전』의 완성본 「을사대전」은 이하 「을사대전」으로 칭함)이 시행되었다.

『을사대전』은 성종 16년(1485)에 초주갑인자로 간행되었다. 이때 간행된 초판의 완질이 남아 있지 않다. 개인소장본은 권1-2가 남아 있는데 앞부분에 보사(補寫)가 있다. 중종~명종 연간에 간행된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은 권1-3만이 남아 있다. 초주갑인자변각본도 권1만 남아 있다. 조선 조 최고 법전의 초판은 완질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 판본들 간의 관계성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 판본의 목록 기술이 자세하지 않아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이 초주갑인자본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초주갑인자변각본은 권1만 남아 있지만 바로 변각한 것이라 중요한 판본이다. 이 세 판본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후 간행된 판본들 간의 계통을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까지 『경국대전』의 연구는 편찬과 제도 및 기록에 관련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서지학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판본 연구는 2007년 보물 제1521호로 지정된 성종 1년(1470)에 간행되어 성종 2년(1471)부터 시행된 『신묘대전』의 판본 연구가 있을 뿐이다.²⁾

1) 李成茂, “《經國大典》의 編纂과 《大明律》,” 『역사학보』 125(1990), 87.에 의하면, “조선 초기 편찬의 기본이 되는 법령은 국왕의 명령에 의해 제정될 수 있었다. 국왕의 명령에는 교지(敎旨)와 판지(判旨)가 있다. 교지는 국왕의 명령이고, 판지는 각 관서[六曹]가 의정부를 거쳐 국왕의 결재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해당관청의 입장에서 수교(受敎)라 하였다. 수교가 법조문화된 것을 조례(條例), 조령(條令), 조획(條劃), 조건(條件)이라 하였고, 각 관청에서 이들을 년·월·일을 붙여 모아 놓은 것을 등록(謄錄)이라 하였다.”

2) 양혜원, “『經國大典』 개정판본의 시행 단계 재검토 - 보물 제1521호 경국대전 간행년 판정을 중심으로,” 『불교학

본 연구는 새로 발견된 성종 16년(1485) 초주갑인자본 『을사대전』을 밝히기 위해 『경국대전』의 편찬과 반포, 『을사대전』의 구성과 내용, 『을사대전』의 판본 중 초주갑인자본,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및 초주갑인자번각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서지학, 역사학, 한국학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경국대전』의 편찬

2.1 『경국대전』의 편찬 배경

조선 초기의 법전은 태조 3년(1394) 5월 30일 정도전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사적으로 편찬하여 왕에게 올린 데서 시작되었다.³⁾ 『조선경국전』은 전문(前文)에 해당하는 정보위(正寶位), 국호(國號), 정국본(正國本), 세계(世系), 교서(敎書)의 5조(條)에 이어 치전(治典), 부전(賦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형전(刑典), 공전(工典)의 6전(典)에 따라 조선조 통치의 기본 원칙과 관제의 대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주례(周禮)』 육전 체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⁴⁾ 이 법전은 사찬(私撰)이지만 각 분야의 체도를 기술하여 조선의 건국이념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원화성박물관이 소장한 『조선경국전』은 보물 제1924호로 1책 79장이며 현전하는 국내 유일본이다.

태조 6년(1397) 12월 26일 도당(都堂)에서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⁵⁾로 하여금 무진년 이후에 합당히 행한 조례를 책으로 쓰게 하고 제목을 『경제육전』⁶⁾이라 하여 임금께 아뢰고, 중외(中外)에 인쇄하여 발행하였다.⁷⁾ 영의정 조준의 책임 아래 편찬된 것으로 고려 우왕 14년(1388)부터 조선 태조 6년(1397)까지의 법령과 장차 시행할 법령을 수집해 분류, 편집하였다. 오늘날 전해지지 않으므로 체제와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직접, 간접으로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육전과 각 전마다 여러 강목(綱目)으로 나누어져

연구』 50(2017), 331-360.

3) 『태조실록(太祖實錄)』 5권, 태조 3년(1394) 5월 30일(무진) 1번째 기사.

“戊辰/判三司事鄭道傳撰進『朝鮮經國典』, 上觀覽嘆美, 賜廐馬、綺絹、白銀。”

4) 羅用植, “朝鮮法典編纂에 관한 研究(上),” 『원광법학』 10(1988), 21.

5)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조 1년(1392) 7월 28일(정미) 4번째 기사.

“檢詳條例司: 檢詳二, 以他官兼之; 錄事三, 以三館兼之。”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는 태조 1년(1392) 7월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조선 최초의 법령의 정비와 법전 편찬업무를 관장하던 기구이다. 조선 정종(定宗) 2년(1400) 4월에 폐지되었다.

6) 조준의 『경제육전』은 『원육전』 또는 『경제원육전』이라고도 한다.

7) 『태조실록(太祖實錄)』 12권, 태조 6년(1397) 12월 26일(갑진) 1번째 기사.

“都堂令檢詳條例司, 冊寫戊辰以後合行條例, 目曰『經濟六典』, 啓聞于上, 刊行中外。”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⁸⁾ 조준이 주도한 『원육전』은 이두가 많이 들어 있어 『이두육전』이라고도 한다.

『속육전』은 세 차례 공포 시행되었다. 첫째, 태종 7년(1407) 8월 18일 왕은 속육전수찬소(續六典修撰所)를 설치하고,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하륜에게 그 일을 맡도록 하였다.⁹⁾ 태종 12년(1412) 4월 14일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륜,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穰) 등이 『경제육전』의 『원집상절(元集詳節)』 3권과 『속집상절(續集詳節)』 3권을 개정하여 바쳤다. 세조는 병조판서 황희(黃喜)의 조례(條例) 수정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여 『원전(元典)』·『속전(續典)』을 다시 참고하여 착오를 없앤 뒤에 바치도록 명하였다. 하륜은 다시 『육전』의 원집(元集) 및 속집(續集)을 가지고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원집·속집을 수찬(修撰)하여 바쳤다.¹⁰⁾ 태종 13년(1413) 2월 30일 『경제육전』을 반행하였다. 국초에 정승 조준 등이 수판(受判)한 것의 준수(遵守)할만 한 것을 찬(撰)하여 『경제육전』이라 명목지어 바친 것을 중외(中外)에 간행하였더니, 이때에 이르러 정승 하륜 등이 그 뜻은 존속시키고 이어(俚語)는 제거하여 이를 『원육전』이라 하고, 또 상왕(上王)이 즉위한 이래로 경제(經濟)가 될 만한 것을 골라서 뽑아 『속육전』이라 하여,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인출(印出)하게 하고, 중외에 반포(頒布)하였다.¹¹⁾ 하륜의 『속육전』에는 태조 7년(1398)부터 태종 10년(1410)경까지의 법령 중 영구히 시행할 것들이 실려 있다. 둘째, 세종 4년(1422) 8월 11일에 『속육전』을 수찬하는 인원을 배치하게 되는데,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좌의정 이원(李原)으로 도제조(都提調)를 시키고, 찬성사 맹사성(孟思誠)·참찬 허조(許稠)로 제조(提調)를 시켰다.¹²⁾ 세종 8년(1426) 2월 8일 영의정 이직·찬성 황희·이조 판서 허조 등이 수찬한 『속육전』을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책은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경 등이 이것을 편집하여 상세히 갖추어 내놓으니 나는 매우 이를 가상히 여기며 앞으로 이를 열람하겠다.” 하였다.¹³⁾ 세종 8년(1426) 12월 3일에는 수찬색(修撰色)이 『속육전』과 『등록(謄錄)』을 편찬하여 바쳤다.¹⁴⁾ 다시 개수를 거쳐 세종 10년(1428) 11월 29일에 『신속육전』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제육전(經濟六典), [검색일자 2018. 7. 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2792>>

9) 『태종실록(太宗實錄)』 14권, 태종 7년(1407) 8월 18일(기해) 2번째 기사.

“置『續六典』修撰所, 以晉山府院君 河崙, 領其事.”

10) 『태종실록(太宗實錄)』 23권, 태종 12년((1412) 4월 14일(무진) 2번째 기사.

“更定『經濟六典』元集詳節三卷、續集詳節三卷。初, 領議政府事河崙、星山君 李穰等, 增損考證『六典』元集詳節、續集詳節以進, 上問諸左右曰: “此典果可行之無弊乎?” 兵曹判書黃喜對曰: “臣爲知申事時, 已曾參考, 後爲參知, 復考之, 其條例稍煩, 恐有奉行之難。” 命曰: “『元典』、『續典』, 當更參考, 無有錯誤, 然後進之。” 至是, 崙上言: “謹將『六典』元集及續集, 參考讎校, 去其重複, 易其繁俚, 其事理有可擬議者, 奉旨更定, 修撰元集續集以進, 伏望睿覽, 許令攸司, 印出頒行。” 從之.”

11) 『태종실록(太宗實錄)』 25권, 태종 13년(1413) 2월 30일(기묘) 3번째 기사.

“頒行『經濟六典』。國初, 政丞趙浚等, 撰受判可爲遵守者, 目爲『經濟六典』以進, 刊行中外。至是, 政丞河崙等存其意, 去其俚語, 謂之『元六典』, 又選上王即位以來可爲經濟者, 謂之『續六典』, 令鑄字所印出, 頒布中外。”

12) 『세종실록(世宗實錄)』 17권, 세종 4년(1422) 8월 11일(을미) 1번째 기사.

“乙未/置『六典』修撰色, 以星山府院君 李穰、左議政李原爲都提調, 贊成事孟思誠、參贊許稠爲提調.”

13) 『세종실록(世宗實錄)』 31권, 세종 8년(1426) 2월 8일(임신) 4번째 기사.

“領議政李穰、贊成黃喜、吏曹判書許稠等, 進所修『續六典』, 上曰: 此書成之未易, 卿等編錄, 纖悉備具以進, 予甚嘉之, 將覽焉.”

5권과 『등록』 1권을 완성하였고,¹⁵⁾ 세종 11년(1429) 3월 18일에 『원육전』과 『속육전』을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하였다.¹⁶⁾ 셋째, 세종은 『신속육전』이 시행된 뒤에도 법전의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세종 15년(1433) 정월 4일 황희 등이 새로 편찬한 『신찬경제속육전』을 편찬하였는데 『정전(正典)』 6권, 『등록』 6권이였다. 이를 주자소에 인쇄하도록 명하였다.¹⁷⁾ 그러나 30여 개 조문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이를 별도로 인쇄, 『속육전』의 말미에 첨가하였다. 이들 『속육전』도 태조의 법치주의 이념을 계승한 의지의 결정으로서 법전 편찬에 쏟은 경륜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 『속육전』은 오늘날 하나도 전해오지 않으며, 조문의 일부만이 조선왕조실록 여기저기에 인용되어 있을 뿐이다.¹⁸⁾

『경국대전』의 편찬의 배경은 서거정(徐居正)이 쓴 『경국대전서(經國大典序)』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및 관련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편찬은 세조가 중심이 되었고, 왕명을 받은 신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경국대전』 서문 중에 세조가 신하들에게 『경국대전』을 편찬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선대왕들의 깊게 인자하시고 후덕함과 넓고도 빼어난 규범이 법조문 곳곳에 배어 있으니 이것이 『원육전』, 『속육전』과 『육전등록』이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내린 교지(敎旨)들이 아름답지 못한 법 아닌 것이 없지만, 신하들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제대로 만들어 행하지 못했다. 이는 진실로 법의 과(科)와 조(條)가 너무 많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데 있는데, 이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까닭이다. 이에 조정하여 증감하고 산정(刪定)하고 회통(會通)하여 자손만대의 성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였다.¹⁹⁾

14) 『세종실록(世宗實錄)』 34권, 세종 8년(1426) 12월 3일(임술) 4번째 기사.

“修撰色撰進『續六典(續六典)』及『謄錄』.”

15) 『세종실록(世宗實錄)』 42권, 세종 10년(1428) 11월 29일(정축) 2번째 기사.

“詳定所提調星山府院君 李稷等, 撰『六典』五卷、『謄錄』一卷以進.”

16) 『세종실록(世宗實錄)』 43권, 세종 11년(1429) 3월 18일(갑자) 4번째 기사.

“命印頒『元六典』・『續六典』于中外官.”

17) 『세종실록(世宗實錄)』 59권, 세종 15년(1433) 1월 4일(무오) 3번째 기사.

“詳定所都提調黃喜等, 進新撰『經濟續六典』。其箋曰: 竊聞古昔帝王之治天下國家也, 莫不有成書以記當時典章法度, 以爲一代之制。二典三謨, 唐、虞之法也; 『周官』、『周禮』, 成周之法也。恭惟太祖康獻大王聖德應運, 化家爲國。相臣趙浚等, 哀集教條, 目曰『經濟六典』, 刊板流行, 與民共守。太宗恭定大王時, 政丞河崙等, 乃撰『續典』, 及我主上殿下嗣位, 議政李稷等繼河崙所撰, 刪述舊文以進。既加清讌之覽, 以爲猶有未盡, 爰命臣等, 更加搜討。將河崙、李稷等書及二書所不載令甲條件, 詳加採擇, 去其重複, 芟其繁蕪, 其去取一受睿裁, 會粹成書, 爲正典六卷。又擇其一時所用非經久之法, 別爲謄錄六卷, 繕寫投進。伏望頒諸中外, 使子孫萬世有所持守, 實社稷宗廟無疆之休。上命鑄字所印之。”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속육전(續六典), [검색일자 2018. 7. 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30437>>

19) 윤국일 옮김, 『신편 경국대전』 (서울: 신서원, 2005), 9.

“…嘗謂左右曰。我 祖宗深仁厚澤。宏規懿範。播在令章者。曰元續六典謄錄。又有累降教旨。法非不美。官吏庸愚。眩於奉行。良由科條浩繁。前後牴牾。不一大定耳。今欲斟酌損益。刪定會通。爲萬世成法。…”

위의 내용에 의거하면, 『경국대전』은 선대왕들이 편찬한 『원육전』, 『속육전』과 『육전등록』과 왕이 내린 교지들이 있었는데, 법의 과(科)와 조(條)가 너무 많아 이를 조정하여 증감하고 회통하여 편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2.2 『기축대전』의 편찬

『기축대전』은 세조대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편찬되는 과정을 거쳐 예종 원년(1469) 11월 16일에 반포되었다.

세조 1년(1455) 7월 5일 양성지(梁誠之)가 세조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취지는 태조·세종때 『원전』, 『속전』 및 『등록』이 모두 좋은 법이긴 하지만, 전제(田制)와 의주(儀註)가 아직 일정한 법제를 이루지 못하였고, 병제(兵制)와 공법(貢法)도 임시로 적당하게 한 법이 많으니 만세에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조는 이 건의를 흡족하게 받아들였다.²⁰⁾ 이는 새로운 법전 편찬에 대한 구상이 임금과 신하 사이에 분명 있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양성지는 세조 3년(1457) 3월 15일 좀 더 구체적인 건의를 올려 “여러 법전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법전인 『육전』을 만들어야 하고, 그 법전에는 백관의 직무를 종합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²¹⁾ 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건의는 세조가 종합적 법전의 체계를 세우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양성지의 건의가 있는 후 세조 3년(1457)에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가 설치되었다. 세조 4년(1458) 윤 2월 24일 육전상정관(六典詳定官) 등이 편찬한 법전을 올리니, 임금이 친히 보고 필삭(筆削)하였고,²²⁾ 세조 6년(1460) 7월 17일에 먼저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과 「호전등록(戶典謄錄)」을 완성하여 『경국대전』 「호전」을 반행하여 『원전』과 『속전』, 『등록』 내의 「호전」을 거두도록 하였다.²³⁾ 세조 7년(1461) 2월 15일 우부승지(右副承旨) 김국광(金國光)에게 『경국대전』 「형전」을 상정(詳定)하도록 하였다.²⁴⁾ 세조 7년(1461) 5월 9일 영의정 정창손(鄭昌孫)·형조판서 박원형

20) 『세조실록(世祖實錄)』 1권, 세조 1년(1455) 7월 5일(무인) 3번째 기사.

“一, 定制度。蓋休養生息, 固人君之先務, 而立法定制, 亦不可緩也。愛民則爲國之本, 立法則馭世之道, 固不可舉此而遺彼也。若法制未定, 則一時典章, 隨立隨改, 後世子孫, 固無所憑依矣。… 本朝太祖、世宗之時有『元典』、『續典』, 又有謄錄, 皆良法也。然田制、儀注未成一定之制, 兵制、貢法多爲權宜之法, 豈非盛代之闕典歟? 乞命大臣更加商確, 以定一代之制, 以爲萬世子孫之則, 幸甚。… 謂誠之曰: ‘汝之兩疏, 皆甚切也。’”

21) 『세조실록(世祖實錄)』 7권, 세조 3년(1457) 3월 15일(무인) 3번째 기사.

“一, 汰冗官。蓋冗官不可不汰也。然立法定制, 當熟究利病, 將期百年無弊, 不可一時草草爲之也。當今之計, 先取『續典』以後條章, 撰『新典』, 『新典』既成, 合『元典』、『續典』、『謄錄』、『新典』等, 四書而參考之, 作六典大成, 仍定官制, 官制定時, 酌百官事孰爲可汰孰爲不可汰, 而增減之。如是則新典成, 而近年條章有所去就, 六典大成, 而前後法度有所歸一, 官制定而百官有所遵守, 而冗官亦以汰矣。御書曰: 予既布置矣, 正合予心。”

22) 『세조실록(世祖實錄)』 11권, 세조 4년(1458) 윤2월 24일(임오) 1번째 기사.

“壬午/御後殿, 六典詳定官等各持所撰之典以啓, 上親覽筆削。”

23) 『세조실록(世祖實錄)』 21권, 세조 6년(1460) 7월 17일(신묘) 2번째 기사.

“命頒行新定『經國大典』戶典, 收『元』、『續典』及『謄錄』內戶典。”

24) 『세조실록(世祖實錄)』 23권, 세조 7년(1461) 2월 15일(병술) 2번째 기사.

(朴元亨)·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순지(李純之)가 빈청(賓廳)에 나아가,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국광과 종친부(宗親府) 전침(典籤) 김양경(金良璫)과 더불어 「형전」을 수교(讎校)하였다.²⁵⁾ 세조 7년(1461) 7월 9일 『경국대전』 「형전」을 완성해 반행하였다.²⁶⁾ 세조 13년(1467) 9월 26일 은천군(銀川君) 이찬(李攢) 등에게 명하여 새로 지은 「형전」을 수교하게 하였고,²⁷⁾ 세조 13년(1467) 12월 21일 임금이 명하여 집의(執義) 이극돈(李克墩)·군자감정(軍資監正) 김순명(金順命)·선전관(宣傳官) 최연명(崔延命)·이의형(李義亨)을 우편으로 삼고, 성균직강(成均直講) 김유(金紐)·헌납(獻納) 조간(曹幹)·한성판관(漢城判官) 양진손(梁震孫)·사인(舍人) 이길보(李吉甫)를 좌편으로 삼아, 새로 지은 「형전」·「호전」의 잘못된 곳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니, 이극돈 등이 찾아낸 것이 많았는데, 표피(豹皮)를 각각 1장(張)씩 내려 주었다.²⁸⁾ 세조 13년(1467) 12월 24일 비현합(丕顯閣)에 나아가서, 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 등을 불러 새로 지은 『대전』을 의논하다가, 그날 저녁에야 파(罷)하였다.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지금 새로 편찬한 『대전』 가운데 「호전」·「형전」은 청컨대 먼저 인쇄하여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내년 정월부터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고²⁹⁾ 하는 것으로 보아 세조 13년(1467) 12월 24일 『경국대전』 가운데 「호전」·「형전」을 인쇄하고 세조 14년(1468) 정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 중 「호전」·「형전」 이외에 「이전」·「예전」·「병전」·「공전」에 대해서도 꾸준히 논의되었다. 세조 10년(1464) 2월 5일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영옹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운성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영의정 신숙주(申叔舟)·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 등을 불러 『육전』을 의논해 정하였다.³⁰⁾ 세조 11년(1465) 5월

“御忠順堂, … 右副承旨金國光詳定新刑典.”

25) 『세조실록(世祖實錄)』 24권, 세조 7년(1461) 5월 9일(무신) 1번째 기사.

“戊申/領議政鄭昌孫、刑曹判書朴元亨、知中樞院事李純之詣賓廳, 與左副承旨金國光、宗親府典籤金良璫讎校「刑典」。”

26) 『세조실록(世祖實錄)』 25권, 세조 7년(1461) 7월 9일(정미) 2번째 기사.

“今頒行『經國大典』『刑典』, 京中則今七月十五日, 京畿則二十三日, 忠淸、黃海、江原道則二十八日, 全羅、慶尙、平安、咸吉道則八月十三日爲始遵行.”

27) 『세조실록(世祖實錄)』 43권, 세조 13년(1467) 9월 26일(무자) 1번째 기사.

“戊子/命銀川君 攢、玉山君 躋、牟陽都正 植、福城副守 穎、河東君 鄭麟趾、蓬原君 鄭昌孫、綾城君 具致寬、領議政崔恒、仁山君 洪允成、茂松君 尹子雲、漢城府尹李石亨、大司憲梁誠之、行護軍丘從直、中樞院同知事洪應、與文臣李克基·孫昭·金順命·俞鎮·崔灝元·俞希益·柳允謙·李孟賢·李陸·柳暉·李瓊全·金紐·金璫及安孝禮·裴敬興, 讎校新制刑典.”

28) 『세조실록(世祖實錄)』 44권, 세조 13년(1467) 12월 21일(계축) 2번째 기사.

“命執義李克墩、軍資監正金順命、宣傳官崔延命·李義亨爲右, 成均直講金紐、獻納曹幹、漢城判官梁震孫、舍人李吉甫爲左, 攷新「刑」, 「戶典」謬誤處以啓. 克墩等所得居多, 賜豹皮各一張.”

29) 『세조실록(世祖實錄)』 44권, 세조 13년(1467) 12월 24일(병진) 4번째 기사.

“御丕顯閣, 召綾城君 具致寬等, 議新制『大典』, 日夕乃罷. 詳定所啓曰: ‘今新撰『大典』內, 「戶典」, 「刑典」, 請先印頒于中外, 自明年正月行之.’ 從之.”

30) 『세조실록(世祖實錄)』 32권, 세조 10년(1464) 2월 5일(무자) 1번째 기사.

“戊子/御勤政門, 受朝參. 入御思政殿召永膺大君 琰、蓬原府院君 鄭昌孫、雲城府院君 朴從愚、領議政申叔舟、左贊成黃守身等議定『六典』. 時全羅道盜賊成群劫掠, 人甚苦之, 叔舟請遣官捕之. 命以上護軍卞袍世子輔德

21일 임금이 채추(宰樞)·낭관(郎官) 각각 1인씩을 나누어 명하여 『육진』을 수교하게 하니, 이조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호조좌랑(戶曹佐郎) 김유(金紐)는 『이진』을,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영은(李永垠)·사헌장령(司憲掌令) 이극기(李克基)는 『호진』을, 예문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사온주부(司醢注簿) 이평(李枰)은 『예진』을, 병조 판서 김질·성균직강(成均直講) 박숙진(朴叔蓁)은 『병진』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공조좌랑(工曹佐郎) 어세공(魚世恭)은 『형진』을, 인순부윤(仁順府尹) 성임(成任)·병조정랑(兵曹正郎) 정흔(鄭忻)은 『공진』을 교정하였다. 또 좌참찬(左參贊) 최항·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국광·이조판서 한계희·호조판서 노사신(盧思愼)·성균주부(成均注簿) 유순(柳洵)을 도청(都廳)으로 삼았다.³¹⁾ 세조 12년(1466)에는 왕이 누조(累朝)에서 입법(立法)한 것의 과조(科條)가 진실로 번거로워 헤아리고 다듬어 줄이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여 『경국대전』을 정(定)하여 만드셨고, 또 경비가 의거할 데가 없으므로 공부(貢賦)가 고르지 못하였으므로 규식(規式)을 상정(詳定)하였으니, 이에 관리들이 쉽게 봉행할 수 있게 되었고, 민폐를 모두 덜어주었다.³²⁾ 세조 13년(1467) 6월 24일 상정소당상(詳定所堂上)이 각각 새로 정한 『대전』을 가지고 들어와 아뢰니, 임금이 승지 등으로 하여금 박의(駁議)하여 고찰하여서 정하게 하였다.³³⁾ 세조 13년(1467) 7월 29일 상정소의 당상이 새로 지은 『대전』의 초안을 바치니, 임금이 조목(條目)에 따라 논(論)하여 정하였다. 임금이 여러 종친과 재상들에게 명하여 각각 그 소견(所見)을 가지고 어전(御前)에서 논박(論駁) 의논하게 하였다.³⁴⁾ 세조 13년(1467) 9월 8일에 집상전(集祥殿)에 나아가 좌의정 최항·우찬성(右贊成) 김국광·호조판서 노사신과 승지 등을 불러서 『대전』을 의논하여 정(定)하였다.³⁵⁾ 세조 14년(1468) 9월 8일 세조가 승하하여 『대전』의 반포와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종 1년(1469) 9월 27일 상정소제조(詳定所提調) 영성군(寧城君) 최항·우의정 김국광 등이 『경국대전』을 지어 바쳤다. 도승지(都承旨) 권감(權臧)이 아뢰기를, “『경국대전』은 세조께서 가장 유의(留意)하신 일이니, 비록 종묘에 두루 고하지는 못할지라도, 청컨대 영창전(永昌殿)에는 고하소서’

吳凝爲敬差官，聲言點軍習陣而捕之。”

31) 『세조실록(世祖實錄)』 36권, 세조 11년(1465) 5월 21일(정묘) 1번째 기사.

“丁卯/上分命宰樞郎官各一人，讎校『六典』。吏曹參判姜希孟、戶曹佐郎金紐『吏典』，左副承旨李永垠、司憲掌令李克基『戶典』，藝文提學李承召、司醢注簿李枰『禮典』，兵曹判書金碩、成均直講朴叔蓁『兵典』，知中樞院事梁誠之、工曹佐郎魚世恭『刑典』，仁順府尹成任、兵曹正郎鄭忻『工典』。又以左參贊崔恒、同知中樞院事金國光、吏曹判書韓繼禧、戶曹判書盧思愼、成均注簿柳洵爲都廳。…”

32) 『세조실록(世祖實錄)』 47권, 세조 14년(1468) 11월 28일(갑신) 1번째 기사.

“… 丙戌王以累朝立法，科條寔繁，商罔損益，定爲『經國大典』，又以經費無據，貢賦不均，詳定規式，於是吏更易奉行，民弊悉祛。…”

33) 『세조실록(世祖實錄)』 42권, 세조 13년(1467) 6월 24일(정사) 1번째 기사.

“丁巳/詳定所堂上，各齎新定『大典』入啓，上令承旨等駁議考定。…”

34) 『세조실록(世祖實錄)』 43권, 세조 13년(1467) 7월 29일(壬辰) 1번째 기사.

“壬辰/詳定所堂上進新制『大典』草，上逐條論定。命諸宗宰，各以所見駁議於前 …”

35) 『세조실록(世祖實錄)』 43권, 세조 13년(1467) 9월 8일(경오) 1번째 기사.

“庚午/御集祥殿，召左議政崔恒、右贊成金國光、戶曹判書盧思愼及承旨等，議定『大典』。”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가 우리나라의 법제가 번거롭고 자세하다 하여 6전(典)으로 고쳐 정하고, 고금의 법을 참고하여 세절(細節)을 버리고 강령(綱領)을 두어서 간략하게 하였다. 개국한 지 5, 6년에 겨우 『형전』·『호전』의 2전(典)을 이루고, 이때에 이르러 6전이 다 성취되었는데, 그 『형전』·『호전』은 거의 다 세조의 어제이다.³⁶⁾ 예종 1년(1469) 11월 16일 예조에 전지하기를, “『경국대전』은 예종 2년(1470) 정월 초 1일부터 준행하라.”³⁷⁾라고 하였다. 이것이 『기축대전』인데, 예종이 1년(1469) 11월 28일에 승하하여 실행되지 못하였다.

『기축대전』에 대해서는 서거정이 예종 1년(1469) 9월 하순에 쓴 『경국대전』의 서문에 종합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 최항, 우의정 김국광, 서평군(西平君) 한계희, 우찬성 노사신, 형조판서 강희맹, 좌참찬 임원준(任元濬), 우참찬 홍응(洪應), 중추부 동지사 성임(成任) 및 서거정에게 명하여, 여러 조목들을 모아 상세히 살펴 취사선택하여 편차를 정해 책을 만들되 번잡하고 쓸데없는 것은 산삭하고 정간(精簡)하기를 힘쓰도록 하고, 그 과정의 모든 조치를 주상의 재결을 받게 하였다. 또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와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에게 명하여, 출납을 담당하게 하였다. 책이 이루어지자 여섯 권으로 만들어서 올리니,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형전』과 『호전』은 이미 반포하여 시행하였고, 나머지 네 개의 법전은 미처 교정을 보지 못했는데, 주상께서 갑자기 승하하셨다. 지금의 성상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 드디어 일을 마치고, 중외에 반포하셨다.”³⁸⁾라고 하였다.

2.3 『신묘대전』 및 『갑오대전』의 편찬

성종 1년(1470) 2월 9일 봉원군(蓬原君) 정창손·고령군(高靈君) 신숙주·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청송군(靑松君) 심회(沈滄)·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좌의정 윤자운(尹子雲)·호조판서 서거정·공조판서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호전』·『공전』을 교정(校定)하게 하였다.³⁹⁾ 성종 1년(1470) 2월 11일 봉원군 정창손·고령군 신숙

36) 『예종실록(睿宗實錄)』 7권, 예종 1년(1469) 9월 27일(정미) 2번째 기사.

“詳定所提調寧城君 崔恒、右議政金國光等，撰進『經國大典』，賜恒、國光鷹子各一連。都承旨權城啓：『『大典』，世祖最留意事也，雖未遍告宗廟，請告永昌殿。』從之。世祖以我國法制煩密，乃改定六典，參究古今憲章，去細節存綱領，以約之。開局五六年，僅成刑、戶二典，至是六典畢就，其刑、戶典，率皆世祖御製。”

37) 『예종실록(睿宗實錄)』 8권, 예종 1년(1469) 11월 16일(병신) 4번째 기사.

“傳于禮曹曰：『『經國大典』，自庚寅年正月初一日，遵行。』”

38) 윤국일 옮김, 『신편 경국대전』 (서울: 신서원, 2005), 10-11.

“仍 命寧城府院臣崔恒，右議政臣金國光，西平君臣韓繼禧，右贊成臣盧思愼，刑曹判書臣姜希孟，左參贊臣任元濬，右參贊臣洪應，中樞府同知事臣成任暨臣居正。哀集諸條。詳加採擇。撰次爲書。刪繁削冗。務要精簡。凡所措置。皆稟睿裁。又 命永順君臣溥，河城君臣鄭顯祖。掌出納。既成。釐爲六卷以進。賜名曰經國大典。刑，戶二典。既已頒行。四典未及讎正。八音遽遏。聖上適迫先志。遂訖就緒。用頒中外。”

39) 『성종실록(成宗實錄)』 3권, 성종 1년(1470) 2월 9일(무오) 3번째 기사.

주·상당군 한명회·능성군 구치관·청송군 심회·영성군 최항·영의정 홍윤성(洪允成)·좌의정 윤자운(尹子雲)·상락군(上洛君) 김질(金漬)·검이조판서 한계미(韓繼美)·호조판서 서거정을 명하여 불러 「호전」·「이전」을 교정하게 하였다.⁴⁰⁾ 성종 1년(1470) 2월 14일 봉원군 정창손·상당군 한명회·능성군 구치관·청송군 심회·상락군 김질·좌의정 윤자운·이조겸판서 한계미를 불러 「이전」을 교정하게 하였다.⁴¹⁾ 성종 1년(1470) 4월 5일 새로 정한 『대전』의 「이전」을 원상과 승지들로 하여금 교정하게 하였다.⁴²⁾ 성종 1년(1470) 4월 6일 새로 정한 『대전』이 비록 원상(院相)의 수교를 거치었으나 오히려 착오가 있을까 두려우니, 이극돈(李克墩)·최호원(崔灝元)·김유(金紐)로 하여금 다시 교정하도록 하였다.⁴³⁾ 성종 1년(1470) 10월 27일 최항 등이 『경국대전』을 다시 수정해서 올렸고,⁴⁴⁾ 성종 1년(1470) 11월 5일 『대전』 교정청(校正廳)⁴⁵⁾의 당상낭청(堂上郎廳)을 불러서 이들을 먹이고,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⁴⁶⁾ 성종 1년(1470) 11월 8일 예조에 전지(傳旨)하기를, ‘새로 정한 『경국대전』의 아직 반포하지 못한 조건(條件)을 오는 신묘년 정월(正月) 초하루부터 준용(遵用)하도록 하라.’⁴⁷⁾고 하였는데, 이것이 『신묘대전』이며, 『경국대전』의 제1차 수정본이다. 이 『신묘대전』은 보물 제1521호로 지정된 실물이 남아 있다.⁴⁸⁾

『신묘대전』에 누락된 조문이 있어 다시 개수하기 시작하였다. 성종 2년(1471) 5월 25일 예조에서 일찍이 교정청에 내린 단자(單子)는 한때는 준행(遵行)하였으나 『대전』의 조건(條件)에 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조목을 열거하여 아뢰었는데 130개 조목이었다.⁴⁹⁾ 성종 4년 11월 4일에 이들의 수정

“命蓬原君 鄭昌孫、高靈君 申叔舟、上黨君 韓明澮、綾城君 具致寬、青松君 沈澮、昌寧君 曹錫文、左議政尹子雲、戶曹判書徐居正、工曹判書梁誠之，校定戶典、工典。…”

40) 『성종실록(成宗實錄)』 3권, 성종 1년(1470) 2월 11일(경신) 2번째 기사.

“命召蓬原君 鄭昌孫、高靈君 申叔舟、上黨君 韓明澮、綾城君 具致寬、青松君 沈澮、寧城君 崔恒、領議政洪允成、左議政尹子雲、上洛君 金漬、兼吏曹判書韓繼美、戶曹判書徐居正，校定戶典、吏典。”

41) 『성종실록(成宗實錄)』 3권, 성종 1년(1470) 2월 14일(계해) 3번째 기사.

“命召蓬原君 鄭昌孫、上黨君 韓明澮、綾城君 具致寬、青松君 沈澮、上洛君 金漬、左議政尹子雲、吏曹兼判書韓繼美，校定吏典。”

42) 『성종실록(成宗實錄)』 4권, 성종 1년(1470) 4월 5일(계축) 7번째 기사.

“傳曰：‘新定吏典，令院相及諸承旨，詳加考校以啓。’”

43) 『성종실록(成宗實錄)』 4권, 성종 1년(1470) 4월 6일(갑인) 2번째 기사.

“傳曰：‘新定『大典』，雖經院相讎校，然恐猶有錯誤，令李克墩、崔灝元、金紐更校。’”

44) 『성종실록(成宗實錄)』 8권, 성종 1년(1470) 10월 27일(신미) 2번째 기사.

“寧城府院君 崔恒等，校正『經國大典』以進。”

45) 교정청(校正廳): 조선시대 서적 편찬시 교정, 보완을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기구이다. 성종 1년(1470)에 경국대전을 최종 검토하기 위해 처음 설치되었다. 교정관으로는 정창손,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최항 등이 임명되었다.

46) 『성종실록(成宗實錄)』 8권, 성종 1년(1470) 11월 5일(기묘) 2번째 기사.

“命召『大典』校正廳堂上、郎廳饋之，賜物有差。”

47) 『성종실록(成宗實錄)』 8권, 성종 1년(1470) 11월 8일(임오) 3번째 기사.

“傳于禮曹曰：新定『經國大典』未頒條件，來辛卯正月初一日，始遵用。”

48) 양혜원, “『經國大典』 개정판본의 시행 단계 재검토 - 보물 제1521호 경국대전 간행년 판정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50(2017), 347.

49) 『성종실록(成宗實錄)』 10권, 성종 2년(1471) 5월 25일 丁酉 12번째 기사.

“禮曹啓：曾下校正廳單子，一時遵行，不載『大典』條件，開坐以啓，請令該曹，仍舊奉行從之。…”

은 완성되었고, 왕명에 의해 성종 5년(1474) 2월 초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⁵⁰⁾ 성종 5년(1474) 1월 2일에는 『경국대전』을 개찬(改撰)하여 중외에 반포하였는데, 『대전』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72조(條)였는데, 『속록(續錄)』이라 하였다.⁵¹⁾ 이때에 반포된 『경국대전』과 『속록』이 『갑오대전』이며, 『경국대전』의 제2차 수정본이다.

2.4 『을사대전』의 편찬

성종 12년(1481) 9월 17일에 시독관(侍讀官) 김흔(金訢)과 지사(知事) 서거정의 건의에 의해 『경국대전』의 주해와 재검토 논의가 있었고,⁵²⁾ 이에 따라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수정 보완하였고, 성종 13년(1482) 10월 8일 노사신이 『경국대전』을 감교(勘校)하는 일은 승지(承旨)로 하여금 출납(出納)하도록 하면, 유망(遺忘)됨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직접 아뢰도록 청하여 성종의 허락을 얻었다.⁵³⁾ 성종 13년(1482) 11월 9일 홍응(洪應)·노사신·허중(許琮)이 『대전』의 수개(修改)할 곳을 아뢰니, 임금이 영돈녕(領敦寧) 이상을 불러서 참결(參決)하기를 마쳤다.⁵⁴⁾ 성종 15년(1484) 6월 29일 승정원에 전교하여 감교청에서 『경국대전』의 교정을 마친 뒤에 의정부·육조(六曹)와 재상들이 당부(當否)를 참고하게 한 것은 『속진』에 관련된 것이므로 선왕(先王)께서 이미 시행하신 『경국대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못하게 하였다.⁵⁵⁾ 성종 15년(1484) 7월 3일 승지들이 『육진』은 육조(六曹)를 시켜 관장하는 법전만을 보게 하고, 또 육조 이외에서 감당할 만한 자 몇 사람을 가려서 따로 한 국(局)을 두고 기일을 한정하여 살펴보게 하면 일이 쉽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성종은 『대전』은 새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만 수교(受敎)와 속록(續錄)의 말을 옮겨 실었을 뿐이고, 그 사이에 고친 곳이 있더라도 많지는 않으며, 옛말에 '길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50) 『성종실록(成宗實錄)』 36권, 성종 4년(1473) 11월 14일(신축) 8번째 기사.

“傳旨禮曹曰：『經國大典』來甲午年二月初一日爲始行用。”

51) 『성종실록(成宗實錄)』 38권, 성종 5년(1474) 1월 2일(무자) 4번째 기사.

“改撰『經國大典』，頒于中外，其不錄『大典』者，名爲續錄，共七十二條竝頒之。”

52) 『성종실록(成宗實錄)』 133권, 성종 12년(1481) 9월 17일(무자) 2번째 기사.

“…侍讀官金訢啓曰：『『大典』多難解處，官吏莫適所從，請加註解，令人易曉。』知事徐居正曰：『官吏眩於奉行，以我國法令不一也。聞高皇帝定律戒後世曰：『改此者，以謀叛論。』是故，法一而民知所從。』上曰：近年受敎煩數，或與『大典』牴牾，不可不參證更定。”

53) 『성종실록(成宗實錄)』 147권, 성종 13년(1482) 10월 8일(계유) 2번째 기사.

“御經筵。講訖，領事盧思愼啓曰：『今『大典』勘校事，令承旨出納。臣恐轉啓之間，或有遺忘也。臣等請親啓。…』上皆可之。”

54) 『성종실록(成宗實錄)』 147권, 성종 13년(1482) 11월 9일(계묘) 2번째 기사.

“上御宣政殿。洪應、盧思愼、許琮，將『大典』修改處，進稟。上召領敦寧以上，參決訖 …。”

55) 『성종실록(成宗實錄)』 167권, 성종 15년(1484) 6월 29일(갑신) 1번째 기사.

“甲申/傳于承政院曰：前日子令勘校廳，『大典』畢校定役後，議政府、六曹及諸宰相，參考當否。今更思之，其所添錄，皆自『續錄』而來，是先王已行之法也。若諸宰相各執所見，論議紛紜，則『大典』何時而定乎？勿令參考，何如？其問(戡)勘校廳。”

되어도 이루지 못한다' 하였으니, 내 생각으로는 살펴보게 하지 말고 빨리 끝내는 것이 어떠할까 한다'라고 하였다.⁵⁶⁾ 성종 15년(1484) 12월 4일 새로 교감한 『대전』은 성종 16년(1485) 정월 초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⁵⁷⁾ 이것이 조선조 최종으로 확정된 완성본 『을사대전』이다.

3. 『을사대전』의 구성과 내용

『을사대전』 첫머리에는 『기축대전』 편찬 당시에 쓴 서거정의 「서(序)」와 최항의 「진경국대전진(進經國大典箋)」이 있다. 6권의 목록을 살펴보면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을사대전』의 구성

육전/권수	세목	세목 내용
吏典/권1	29目	內命婦, 外命婦, 京官職, 奉朝賀, 內侍府, 雜職, 外官職, 土官職, 京衙前, 取才, 薦舉, 諸科, 除授, 限品敍用, 告身, 政案, 解由, 褒貶, 考課, 祿牌, 差定, 遞兒, 老人職, 追贈, 贈諡, 給暇, 改名, 相避, 鄉吏
戶典/권2	29目	經費, 戶籍, 量田, 籍田, 祿科, 諸田, 田宅, 給造家地, 務農, 蠶室, 軍資倉, 常平倉, 會計, 支供, 解由, 兵船 載糧, 魚監, 外官供給, 收稅, 漕轉, 稅貢, 雜稅, 國幣, 獎勵, 備荒, 買賣限, 徵債, 進獻, 搖役, 雜令
禮典/권3	61目	諸科, 儀章, 生徒, 五服, 儀註, 宴享, 朝儀, 事大, 待使客, 祭禮, 奉審, 致祭, 陳弊, 奉祀, 給暇, 立後, 婚嫁, 喪葬, 取才, 用印, 依牒, 藏文書, 獎勵, 頒詠, 惠恤, 雅俗樂, 選上, 度僧, 寺社, 參謁, 京外官迎送, 京外官相見, 京外官會坐, 請臺, 雜令, 用文字式,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堂上官妻告身式, 三品以下妻告身式, 紅牌式, 白牌式, 雜科白牌式, 祿牌式, 追贈式, 鄉吏免役賜牌式, 奴婢土田賜牌式, 啓本式, 啓目式, 平關式, 牒呈式, 帖式, 立法出依牒式, 起復出依牒式, 解由移關式, 解由牒呈式, 度牒式, 立案式, 勘合式, 戶口式, 准戶口式
兵典/권4	51目	京官職, 雜職, 外官職, 土官職, 京衙前, 伴僮, 外衙前, 軍官, 驛馬, 草料, 試取, 番次都目, 軍士給仕, 諸道兵船, 武科, 告身, 褒貶, 入直, 擲奸, 行巡, 啓省記, 門開閉, 侍衛, 疊鼓, 疊鍾, 符信, 教閱, 屬衛, 名簿, 番上, 留防, 給保, 成籍, 軍士, 還屬, 復戶, 免役, 給假, 救恤, 城堡, 軍器, 兵船, 烽遂, 廐牧, 積芻, 護諫, 迎送, 路引, 改火, 禁火, 雜類, 用刑
刑典/권5	28目	用律, 決獄日限, 囚禁, 推斷, 禁刑日, 濫刑, 偽造, 恤囚, 逃亡, 才白丁團聚, 捕盜, 贓盜, 元惡鄉吏, 銀錢代用, 罪犯準計, 告尊長, 禁制, 訴冤, 停訟, 賤妾, 賤妻妾子女, 公賤, 私賤, 賤娶婢產, 關內各差備, 根隨, 諸司差備奴根隨奴定額, 外奴婢
工典/권6	14目	橋路, 營繕, 度量衡, 院宇, 舟車, 栽植, 鐵場, 柴場, 寶物, 京役吏, 雜令, 工匠, 京工匠, 外工匠

56) 『성종실록(成宗實錄)』 168권, 성종 15년(1484) 7월 3일(정해) 1번째 기사.

“丁亥/承旨等啓曰: ‘...『大典』令六曹, 只觀所掌之典, 又於六曹之外, 擇其可當者數人, 別設一局, 刻日看審, 則事可易就矣.’” 傳曰: “『大典』非創新法, 只以受教及『續錄』之語, 移載耳. 其間雖有改正處, 亦不多. 古云: ‘作舍道傍, 三年不成.’ 予意毋令看審, 而速畢何如? ...”

57) 『성종실록(成宗實錄)』 173권, 성종 15년(1484) 12월 4일(정사) 3번째 기사.

“傳旨禮曹曰: 新勸校『大典』, 來乙巳年正月初一日爲始, 行用.”

위 <표 1>의 『을사대전』의 구성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을사대전』의 구성은 중국의 법전인 『주례』 육전의 형식을 따라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 29목, 「호전」 29목, 「예전」 61목, 「병전」 51목, 「형전」 28목, 「공전」 14목의 총 212목이다.

2) 「이전」 29목은 조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행정조직인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면·사령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시대 관제는 문관과 무관으로 분류하는데 「이전」에는 문관만을 다루고 있다. 「이전」의 소속관청[屬衙門]은 충익부(忠翊府), 내시부(內侍府), 상서원(尙瑞院), 종부시(宗簿寺), 사옹원(司饔院), 내수사(內需司), 액정서(掖庭署)이다.

「이전」의 행정조직은 중앙에 있는 왕실과 중앙관청 및 지방관청이 있다. 29목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목의 내명부는 대궐 안에 있는 작위를 가진 여인을 가리키고, 제2목의 외명부는 국왕의 집안사람이나 친척·관리들의 아내로 남편의 관직에 의하여 작위를 받는 여자를 말한다. 제3목의 경관직[중앙관직]은 정1품 관청으로 의정부(議政府), 충훈부(忠勳府), 의빈부(儀賓府), 돈녕부(敦寧府)가 있고, 종1품 관청으로 의금부(義禁府)가 있다. 정2품 관청으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가 있고, 종2품 관청으로 사헌부(司憲府), 개성부(開城府), 충익부(忠翊府)가 있다. 정3품 관청으로 승정원(承政院), 장례원(掌隸院), 사간원(司諫院), 경연(經筵),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성균관(成均館), 상서원(尙瑞院), 춘추관(春秋館), 승문원(承文院), 통례원(通禮院), 봉상시(奉常寺), 종부시(宗簿寺), 교서관(校書館), 사옹원(司饔院), 내의원(內醫院), 상의원(尙衣院), 사복시(司僕寺), 군기시(軍器寺),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사도시(司導寺), 예빈시(禮賓寺), 사섬시(司贍寺), 군자감(軍資監), 제용감(濟用監), 선공감(繕工監), 사재감(司宰監), 장악원(掌樂院), 관상감(觀象監), 전의감(典醫監), 사역원(司譯院)이 있고, 종3품 관청으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이 있다. 정4품 관청으로 종학(宗學),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전설사(典設司), 풍저창(豐儲倉), 광흥창(廣興倉)이 있고, 종4품 관청으로 전함사(典艦司), 전연사(典涓司)가 있다. 정5품 관청으로 내수사(內需司)가 있고, 종5품 관청으로 소격서(昭格署),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평시서(平市署), 사온서(司醢署), 의영고(義盈庫), 장흥고(長興庫), 빙고(氷庫)가 있다. 정6품 관청으로 장원서(掌苑署), 사포서(司圃署)가 있고, 종6품 관청으로 양현고(養賢庫), 전생서(典牲署), 사축서(司畜署), 조지서(造紙署), 혜민서(惠民署), 도화서(圖書署), 전옥서(典獄署), 활인서(活人署), 와서(瓦署), 귀후서(歸厚署), 4학(四學), 5부(五部), 문소전(文昭殿), 연은전(延恩殿)이 있다. 제4목의 봉조하는 당상 3품 이상의 관리가 퇴직을 하는 경우의 예우에 관한 것이다. 제5목의 내시부는 왕궁 안에서 국왕을 비롯한 왕비·왕대비·세자 등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하는 관청이다. 제6목의 잡직은 경험이나 기술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 그 소임에 종사하는 벼슬이다. 제7목의 외관직[지방관직]은 각 도별⁵⁸⁾ 관찰사(觀察使)[종2품], 목사(牧使),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정3품], 사(使), 도호부사(都護府使)[종3품], 수(守), 군수(郡守)[종4품], 영(令), 도사(都事), 판관(判官), 현령(縣令)[종5품],

58) 경기(京畿), 충청도(忠淸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황해도(黃海道), 강원도(江原道), 영안도(永安道), 평안도(平安道)의 8도(道)이다.

감(監), 찰방(察訪), 현감(縣監), 교수(教授)[종6품, 훈도(訓導), 왜학훈도(倭學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역승(驛丞)[종9품]이다. 제8목의 토관직은 영안도 영흥부(永興府)와 평안도 평양부(平壤府)에 근무하는 관리를 말한다. 제9목의 경아전은 중앙관서에 근무하는 하위직이다. 녹사(錄事)는 의정부와 중추부(中樞府) 소속으로 기록을 담당한 벼슬아치들로 고위관료들의 서기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서리(書吏)는 녹사보다는 품계가 낮으며 정3품 이상의 관청에서는 종7품, 3품 이하의 관청에서는 종8품에 해당한다. 제10목부터 29목까지는 하위직 공무원 즉 녹사와 도류(道流)의 채용에 관한 시험인 취재(取才),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인재를 추천하는 천거(薦舉), 문과·역과(譯科), 음양과(陰陽科)·의과(醫科)·율과(律科)의 과거시험에 대한 제과(諸科), 해안지대와 변경지대의 고을 원은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임명하는 제수(除授), 관료 계층 내부의 적서(嫡庶)관계에 제한된 한품서용(限品敍用), 관리의 업적평정인 직임명장인 고신(告身), 관리대장인 정안(政案), 인계문건인 해유(解由), 관리의 업적 평가인 포폄(褒貶), 관리의 근무실태조사인 고과(考課), 관리의 녹봉수령에 관한 녹패(祿牌), 임시직무의 배정에 관한 차정(差定), 퇴직관리의 처우에 관한 체아(遞兒), 노령자의 관직 수여에 관한 노인직(老人職), 종친 및 2품 이상의 실직을 가진 문무관리들에 대해 그의 3대 조상들에게 벼슬을 추증해주는 추증(追贈), 종친이나 2품 이상의 실직을 가진 문무관리들에게 시호를 내리는 증시(贈諡), 휴가를 주는 규례인 급가(給暇), 이름을 고치는 규례 개명(改名),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혐의를 피하는 규례인 상피(相避), 시골아전들의 신분제에 관한 규례인 향리(鄉吏)에 관한 규정들이다.

3) 「호전」 29목은 나라의 경제와 관련된 경비, 호적, 토지측량[量田], 직전(籍田), 녹봉 등급, 여러 부류의 토지제도 및 재정과 정부 물품 조달과 관련된 회계, 조세, 화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호전」의 소속 관청은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사도시(司導寺), 사섬시(司贍寺), 군자감(軍資監), 제용감(濟用監), 사재감(司宰監), 풍저창(豐儲倉), 광흥창(廣興倉), 전함사(典艦司), 평시서(平市署), 사온서(司醞署), 의영고(義盈庫), 장흥고(長興庫), 사포서(司圃署), 양현고(養賢庫), 오부(五部)이다.

4) 「예전」 61목은 관리 임용에 관한 여러 종류의 과거제도, 관리들의 예복 규정[儀章], 성균관의 생도(生徒), 상복제도[五服], 연향(宴享), 조회의식[朝儀], 사대(事大), 사신접대[侍使客] 등의 의식 절차, 가정의례, 취재(取才), 문서관리[藏文書], 관리들의 장려(獎勵), 혜휼(惠恤), 선상(選上) 등의 규례에 관한 규정을 다루었다. 공문서 양식인 용문자식(用文字式)의 25식을 첨가하였다. 「예전」의 소속 관청은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성균관(成均館), 춘추관(春秋館), 승문원(承文院), 통례원(通禮院), 봉상시(奉常寺), 교서관(校書館), 내의원(內醫院), 예빈시(禮賓寺), 장악원(掌樂院), 관상감(觀象監), 전의감(典醫監), 사역원(司譯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종학(宗學), 소격서(昭格署),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빙고(氷庫), 전생서(典牲署), 사축서(司畜署),惠民署, 도화서(圖書署), 활인서(活人署), 귀후서(歸厚署), 사학(四學)이며, 문소전(文昭殿), 연은전(延恩殿)의 참봉(參奉)과 경기의 각 능(陵)과 전(殿)의 참봉을 포함한다.

5) 『병전』 51목은 군사와 관계된 군제, 무반직, 군역 의무, 국방과 관련된 교통과 통신, 궁궐의 보위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병전』의 소속 관청은 오위(五衛), 훈련원(訓練院), 사복시(司僕寺), 군기시(軍器寺), 전설사(典設司),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이다. 51목을 요약하면, 한성 소재 군사 업무에 관한 법인 경관직으로 정1품 관청인 중추부(中樞府), 정2품 관청인 5위도총부(五衛都摠府), 정3품 관청인 훈련원(訓練院), 정5품 관청인 세자익위사가 있다. 하급 군인의 직무에 관한 법인 잡직이 있다. 지방 군인의 직무에 관한 법인 외관직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영안도, 평안도에 근무하는 종2품의 병마절도사, 정3품의 수군절도사, 종3품의 병마첨절제사 및 병마우후, 종4품의 병마동첨절제사 및 수군만호, 정6품의 병마평사, 종6품의 병마절제도위 등이 있다. 평안도 및 함경도에 근무하는 하급 군인 직무에 관한 법인 토관직은 정5품부터 종9품에 해당하는 벼슬이 있다. 군인 선발 시험에 관한 법인 군관(軍官), 마패 발급에 관한 역마(驛馬), 무과 시험과 취재에 관한 시취(試取), 번(番) 서는 차례와 업적을 평가하는 군인 복무에 관한 번차도목(番次都目), 전국의 군함과 해군에 관한 제도병선(諸道兵船), 군사 동원 증명서 관리에 관한 법인 부신(符信), 군 형벌 집행에 관한 법인 용형(用刑) 등이 있다.

6) 『형전』 28목은 형사법에 근간이 되는 법체계이지만, 몇몇 헌법적 요소와 형사법규, 노비문제, 상속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전』의 소속 관청은 장례원과 전옥서가 있다. 28목을 요약하면, 『형전』은 대명률에 따라서 형률을 적용하는 용률(用律)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간결하며 다만 대명률을 적용할 수 없는 노예제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판결 기한의 결옥일한(決獄日限), 죄인의 구금(囚禁), 죄인에 대한 신문 및 처결[推斷], 형벌 집행을 금지하는 날인 금형일(禁刑日), 형벌의 남용[濫刑], 인장 및 종이돈의 위조(偽造), 죄수에 대한 구휼[恤囚], 죄수의 도망(逃亡), 재인(才人)과 백정들의 집결[才白丁團聚], 도적의 체포[捕盜], 탐오죄와 도적죄[贓盜], 간악한 시골아전[元惡鄉吏], 은전의 대용[銀錢代用], 범죄와 처형에 대한 환산[罪犯準計], 웃어른에 대한 고발[告尊長], 단속하는 사항[禁制], 억울한 사정에 대한 신소[訴冤], 송사의 정지[停訟], 천인 출신의 첩[賤妾], 천인 출신의 아내와 첩에게서 난 아들딸[賤妻妾子女], 공노비[公賤], 개인노비[私賤], 천인이 여중에게 장가들어 난 자식[賤娶婢產], 대궐 안의 각종 차비[闕內各差備], 따라다니는 하인[根隨], 각 관청에 배정하는 차비 말은 남종과 남종의 정액[諸司差備奴根隨奴定額], 지방관청의 노비[外奴婢]이다.

7) 『공전』 14목은 사회기간산업의 건설, 유지,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도로와 교량, 거마(車馬), 관사, 궁궐, 원우(院宇)에 대한 관리 및 보수 규정과 과수 및 산림보호에 대한 규정, 각종 광물의 등록과 야장(冶匠), 공장(工匠), 도량형 등에 관한 규정을 싣고 있다. 『공전』의 소속 관청은 상의원(尙衣院), 선공감(繕工監),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전연사(典涓司), 장원서(掌苑署), 조지서(造紙署), 와서(瓦署)이다.

위와 같이 『을사대전』에는 조선조 거대한 관료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각종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다. 『이전』은 중앙집권의 방법으로 경관직의 조직을 강화하였는데, 특히 의정부는 최고의결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도록 하였다. 왕의 친족과 외척의 관부인 돈녕부를 두었으며, 내시부를 강화하여 내시는 왕실의 시종이 아니라 학식을 겸하여 갖춘 사람으로 왕을 보필하도록 하였다.⁵⁹⁾ 『호전』은 국가경비, 호적, 조시제도, 토지제도 등의 재정문제와 정부물품조달과 관련된 화폐 등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예전』은 조선조 예치국가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의 영사(領事)가 영의정 또는 육조판서와 마찬가지로 정1품 당상관이었다. 과거제도의 시행은 원래 『이전』에 해당되는데 『예전』에 넣어서 인선의 기준을 예에 두도록 하였다. 사대교린의 외교 업무도 예전에 두어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도록 하였다.⁶⁰⁾ 『형전』은 형사법규, 노비문제 및 상속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고, 『공전』은 사회기간산업의 건설,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4. 『을사대전』의 판본

4.1 초주갑인자본

성종 15년(1484) 12월 4일 새로 교감한 『대전』은 성종 16년(1485) 정월 초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⁶¹⁾ 이것이 조선조 최종으로 확정된 완성본 『을사대전』이다.

『을사대전』의 간행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문헌상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개인 소장자의 초주갑인자본도 전체 권수가 전해지질 않아 간행처의 기록은 알 수 없다. 다만 『을사대전』은 교정청이 주도하여 편찬하였고,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것으로 보아 교서관 또는 주자소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을사대전』의 저본은 현재 성종 1년(1470) 11월에 인반(印頒)하고 성종 2년(1471)에 정월부터 준행된 『신묘대전』의 판본의 형식인 ‘四周單邊, 半郭 25.5 × 17.2 cm, 大字 10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의 형태사항과 같고, 초주갑인자 활자도 같다. 본문의 체제는 종(縱)과 횡(橫)으로 구분하여 예컨대 품계(品階)는 횡으로, 그 해당되는 사항은 종으로 기록하여 열람에 편하게 하였으며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주(註)의 형식으로 2행(行) 소자(小字)로 기재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을사대전』의 초주갑인자본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이 판본은 서문 제1장~제3장, 전(箋) 제1장~제3장, 목록 제1장~제3장이 보사되었고, 목록 제4장~제7장, 권1 본문89장으로 되어 있다. 형태사항은 ‘四周單邊, 半郭 25.0 × 17.6 cm, 大字 10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1.9 ×

59) 신복룡,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해서 본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 『일감법학』 17(2010), 83-84.

60) 신복룡,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해서 본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 『일감법학』 17(2010), 89.

61) 『성종실록(成宗實錄)』 173권, 성종 15년(1484) 12월 4일(정사) 3번째 기사.

“傳旨禮曹曰：新勸校『大典』，來乙巳年正月初一日爲始，行用。”

21.0 cm'이다. 책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좀 닳아 있지만 본문의 인쇄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초주갑인자 큰 자, 작은 자, 소자가 함께 보이는 60장 전면(좌) 및 후면(우)을 <그림 1>로 제시하고 초주갑인자의 인쇄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성종 16년(1485) 『을사대전』 초주갑인자본 60장 전면(좌) 및 60장 후면(우)

출처: 개인소장

<그림 1>을 참조하여 초주갑인자 활자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초주갑인자본과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초주갑인자의 글자본은 경연에 소장된 『효순사실(孝順事實)』, 『위선음즐(爲善陰騰)』, 『논어』 등에서 가려졌고, 부족한 글자는 뒤에 세조가 된 수양대군 유(瑑)가 닳게 써서 보충하였다. 이 경연 소장의 책들은 모두 명나라 초기의 간본이었다. 이 글자체는 매우 명정하고 부드러우며 유려한 필서체이다. 왕희지가 배운 이충의 어머니인 진의 위부인(衛夫人)의 자체와 비슷하다하여 일명 ‘위부인자’라 일컫기도 하고, 어떤 이는 조자양(趙子昂)류의 송설체로 쓴 명초 한림학사의 필서체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명나라 초기 조정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필서체임에는 틀림없다.⁶²⁾

초주갑인자의 글자본으로 경연에 소장되었던 『효순사실』, 『위선음즐』, 『논어』 등의 판본이 남아 있지 않아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을사대전』은 왕희지를 중심으로 하는 진체(晉體)계의 해정하고

62) 천혜봉 지음,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8), 48-49.

유려하면서도 부드러운 필서체이다. 특히 『을사대전』은 세종 16년(1434) 간본인 『대학연의(大學衍義)』와 『분류보주이태백시(分類補註李太白詩)』 판본과 비교해도 초주갑인자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림 1>의 도면에 나타나는 큰 자, 작은 자 소자의 활자들을 종합하여 <표 2>로 제시하고 활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을사대전』의 초주갑인자 큰자, 작은자, 소자 활자

구분	京	外	春	孟	議
큰 자	 (1-60-전-2-3)	 (1-60-전-2-4)	 (1-60-전-6-3)	 (1-60-전-6-4)	 (1-60-전-6-6)
구분	政	府	觀	察	使
큰 자	 (1-60-전-6-7)	 (1-60-전-6-8)	 (1-60-전-7-10)	 (1-60-전-7-11)	 (1-60-전-7-12)
구분	兵	曹	窮	者	不
작은 자	 (1-60-후-1-우15)	 (1-60-후-1-우16)	 (1-60-후-4-우7)	 (1-60-후-4-우8)	 (1-60-후-5-우9)
구분	及	乙	科	衙	門
작은 자	 (1-60-후-5-우10)	 (1-60-후-4-우13)	 (1-60-후-4-우14)	 (1-60-후-7-우1)	 (1-60-후-7-우2)
구분	相	等	者	如	第
소자	 (1-60-후-5-좌우3)	 (1-60-후-5-좌우4)	 (1-60-후-5-좌우5)	 (1-60-후-5-좌우6)	 (1-60-후-5-좌우7)
구분	人	承	仕	不	及
소자	 (1-60-후-5-좌우9)	 (1-60-후-5-좌우12)	 (1-60-후-5-좌우13)	 (1-60-후-5-좌우14)	 (1-60-후-5-좌우15)

※1-60-전-2-3(1권 60장 전면 2행 3열을 의미함), 1-60-후-1-우15(1권 60장 후면 1행 14열 右를 의미함)

첫째, 초주갑인자 활자의 큰 자는 본문 60장 전면의 활자를 샘플(세로×가로 cm)로 살펴보면, 경(京) 1.3×1.3 cm, 외(外) 1.3×1.5 cm, 춘(春) 1.5×1.5 cm, 맹(孟) 1.4×1.4 cm, 의(議) 1.5×1.5 cm, 정(政)

1.3×1.3 cm, 부(府) 1.3×1.4 cm, 관(觀) 1.2×1.2 cm, 찰(察) 1.3×1.5 cm, 사(使) 1.5×1.5 cm 등이다. 평균 세로와 가로 1.2~1.5 cm이다. 이들 글자는 세로와 가로의 크기가 매우 비슷해서 해서의 필력이 살아 있고, 파임에서는 해행서의 깔끔한 마무리가 일품이다.

둘째, 작은 자는 본문 60장 후면의 활자를 샘플(세로×가로 cm)로 살펴보면, 병(兵) 0.9×0.8 cm, 조(曹) 1.0×0.8 cm, 궁(窮) 1.0×0.8 cm, 자(者) 1.0×0.8 cm, 불(不) 0.8×0.8 cm, 급(及) 1.0×0.8 cm, 을(乙) 0.8×0.8 cm, 과(科) 1.1×0.8 cm, 아(衙) 0.9×0.8 cm, 문(門) 0.9×0.7 cm 등이다. 평균 세로는 0.8~1.1 cm이고, 가로 0.7~0.8 cm이다. 이들 글자는 세로가 가로에 비해 약간 길어 보이는 작은 자이지만 글자체는 가늘기를 조정해서 균형이 살아 있다.

셋째, 쌍행의 주 밑에 세주를 달기 위해 사용한 소자는 본문 60장 후면의 활자를 샘플(세로×가로 cm)로 살펴보면, 상(相) 0.8×0.4 cm, 등(等) 1.0×0.4 cm, 자(者) 1.0×0.4 cm, 여(如) 0.8×0.4 cm, 제(第) 1.0×0.4 cm, 인(人) 0.9×0.4 cm, 승(承) 1.0×0.4 cm, 사(仕) 1.0×0.4 cm, 불(不) 0.8×0.4 cm, 급(及) 0.9×0.4 cm 등이다. 평균 세로는 0.8~1.0 cm이고, 가로 0.4 cm이다. 이들 글자는 세로가 가로에 비해 두 배 정도 또는 그 이상 길어서 글자의 균형이 잘 맞질 않고 옆에 있는 글자와 겹쳐져 있다. 획수가 많은 등(等), 제(第), 승(承) 등은 글자의 획들이 균형과는 관계없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4.2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중종~명종 연간(1506-1567) 『을사대전』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은 <표 3>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권1-3이 남아 있다.

<표 3> 중종~명종 연간(1506-1567) 『을사대전』

서명	저판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1) 『經國大典』 권1-권3	성종(成宗)命撰	初鑄甲寅字混入補字本	중종~명종연간 (1506-1567)	四周雙邊 半郭 25.0×17.5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間混3葉花紋魚尾); 30.5×20.7 cm	국립중앙도서관 古朝 33-26 貴96
2) 『經國大典』 권5-권6 ⁶³⁾	"	"	"	四周雙邊 半郭 25.0×17.5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間混3葉花紋魚尾); 30.5×20.7 cm	성암고서박물관

63) 『經國大典』 권5-권6은 성암고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다. 간행연도는 성종 17년(1486)이고, 어미는 上下內向黑魚尾(間混3葉花紋魚尾)여서 간행년도는 중종~명종연간(1506-1567)에 해당한다. 현재 조사가 어려워 소개만 하고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제외하였다.

1)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古朝 33-26, 貴96)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권1-권3의 2책이다. 표지 이면에 ‘四二九四年十二月十八日楷紙製本時割本’이라 되어 있어 1961년 『경국대전』을 장정 하면서 책의 위와 아래를 잘라 정연하게 했지만 실제로 훼손에 해당한다. 고서는 본래 ‘천두(天頭)’와 ‘지각(地脚)’을 넓게 하여 필요시 두주(頭註) 각주(脚註) 등의 주석이나 구결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후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떤 도서관에 소장된 책은 두주나 각주가 잘려나간 경우도 있다. 또 하나는 책이 훼손되는 경우 위아래의 훼손이 많은데, 그 부분이 넓으면 본문의 훼손은 비교적 적다. 권수에 있는 ‘進經國大典箋’ 1장이 결장이다. 다음 장도 훼손이 심한데 책장 뒷부분에 종이를 덧대어 보수하였다. 어미는 上下內向黑魚尾(間混3葉花紋魚尾)여서 기본적으로 초주갑인자의 판식에 나타나는 흑어미에 중종~명종연간에 유행한 3엽화문어미가 섞여 나타난다. 인쇄면도 거칠어 보이는데 마멸된 활자들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종이가 얇고 오래 되어 그렇게 보인다.

위의 <그림 1>의 성종 16년(1485) 『을사대전』 초주갑인자본 60장 전면(좌)과 중종-명종연간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을 <그림 2>로 비교하면 재미있는 현상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 성종 16년(1485) 『을사대전』 초주갑인자본 60장 전면(좌)
및 중종-명종연간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60장 전면(우)

출처: 개인소장 및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그림 2>의 내용을 비교하면, 초주갑인자본의 본래 활자와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마멸된 활자에 차이가 있고, 초주갑인자 본래 활자와 새로 주성된 갑인자의 모양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초주갑인자본의 본래 큰 자 활자(A)와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마멸된 큰 자 활자(B)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초주갑인자본 본래 활자와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마멸된 활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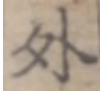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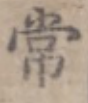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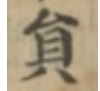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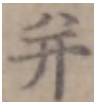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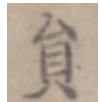
구분	上	上	上	二	官
A	 (1-60-전-2-11)	 (1-60-전-4-7)	 (1-60-전-6-12)	 (1-60-전-4-4)	 (1-60-전-7-4)
구분	上	上	上	二	官
B	 (1-60-전-2-11)	 (1-60-전-4-7)	 (1-60-전-6-12)	 (1-60-전-4-4)	 (1-60-전-7-14)

구분	六	曹	吏	任	書
A	 (1-60-전-6-9)	 (1-60-전-6-10)	 (1-60-전-8-10)	 (1-60-전-8-11)	 (1-60-전-10-2)
구분	六	曹	吏	任	書
B	 (1-60-전-6-9)	 (1-60-전-6-10)	 (1-60-전-8-10)	 (1-60-전-8-11)	 (1-60-전-10-2)

위의 <표 4>를 보면, 초주갑인자본의 본래 큰 자 활자(A)들은 활자 획이 분명하고 초주갑인자의 특징을 그대로 지녔다. 이에 비해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마멸된 큰 자 활자(B)들은 획이 가늘어지고 활자 획이 휘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너무 가늘어진 부분은 먹색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초주갑인자본의 본래 큰 자 활자(A)와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새로 주성된 큰 자 활자(B)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초주갑인자본 본래 활자와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새로 주성된 활자 비교

구분	京	外	西	以	常
A	 (1-60-전-2-3)	 (1-60-전-2-4)	 (1-60-전-2-6)	 (1-60-전-3-17)	 (1-60-전-5-10)
구분	京	外	西	以	常
B	 (1-60-전-2-3)	 (1-60-전-2-4)	 (1-60-전-2-6)	 (1-60-전-3-17)	 (1-60-전-5-10)
구분	并	員	臣	子	及
A	 (1-60-전-5-14)	 (1-60-전-7-5)	 (1-60-전-8-5)	 (1-60-전-8-6)	 (1-60-전-9-5)
구분	并	員	臣	子	及
B	 (1-60-전-5-14)	 (1-60-전-7-5)	 (1-60-전-8-5)	 (1-60-전-8-6)	 (1-60-전-9-5)

위의 <표 5>를 보면, 초주갑인자본의 본래 큰 자 활자(A)들은 활자 획이 분명하고 초주갑인자의 특징을 그대로 지녔다. 이에 비해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새로 주성된 큰 자 활자(B)들은 가로획과 세로획이 길어지면서 밋밋해져서 글 자획의 필서체 느낌이 줄었다. 어떤 글자는 가로획이 길어져서 명정한 글자체의 흐름이 깨졌다.

4.3 초주갑인자변각본

초주갑인자변각본은 성종 16년(1485)에 간행본을 저본으로 하여 성종 16년 이후-성종 25년(1486-1494)에 간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본 『을사대전』 권1(고6025-59, 귀780)이 남아 있다. 현존하는 판본은 <표 6>과 같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성종 16년 이후-성종 25년(1486-1494) 『을사대전』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經國大典』 권1	성종(成宗)命撰	木板本 (初鑄甲寅字 翻刻本)	성종 16년 이후 - 성종 25년 (1486-1494)	四周單邊 半郭 24.4 × 16.8 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白口, 內向黑魚尾: 26.1 × 19.0 cm	국립고6025-59, 귀780)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을사대전』 권1이다. 간행기록이 없지만 인쇄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초주갑인자 활자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어 초기에 번각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표지는 개장되었는데 본래의 표지를 다음 장에 넣어 장정하였다. 권수에는 ‘光州金氏之印’의 먹색 인장이 찍힌 것으로 보아 광주김씨가에 소장되었다가 어느 시기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간 책으로 여겨진다. 앞에는 초주갑인자본과 똑같이 최항의 진전문(進箋文)이 있고, 이어서 서거정의 서문이 있다. 번각본이지만 사주단변의 선이 굵고 인쇄가 선명하고 먹색이 고르다. 천두와 지각에는 필사의 주석이 붙어 있다.

이 책이 초주갑인자의 번각본임을 보기 위해 성종 16년(1485) 『을사대전』 초주갑인자본 60장 전면과 성종 16년 이후-성종 25년 초주갑인자번각본 60장 전면을 비교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성종 16년(1485) 『을사대전』 초주갑인자본 60장 전면(좌)
및 성종 16년 이후-성종 25년 초주갑인자번각본 60장 전면(우)

출처: 개인소장 및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그림 3>을 보면, 성종 16년 이후-성종 25년 초주갑인자번각본이 성종 16년(1485) 『을사대전』 초주갑인자본을 번각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번각본이지만 초주갑인자본의 활자체가 목판본에 잘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주갑인자본의 활자체가 목판본에 잘 구현되고 있음을 살펴보기 위해, <표 4>와 <표 5>에서 사용된 초주갑인자본의 본래 큰 자 활자(A)를 그대로 선택하여 초주갑인자번각본의 큰 자 활자(B)를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초주갑인자본 본래 큰 자 활자(A)와 초주갑인자번각본의 큰 자 활자(B) 비교

구분	上	上	上	二	官
A	 (1-60-전-2-11)	 (1-60-전-4-7)	 (1-60-전-6-12)	 (1-60-전-4-4)	 (1-60-전-7-4)
구분	上	上	上	二	官
B	 (1-60-전-2-11)	 (1-60-전-4-7)	 (1-60-전-6-12)	 (1-60-전-4-4)	 (1-60-전-7-14)
구분	六	曹	吏	任	書
A	 (1-60-전-6-9)	 (1-60-전-6-10)	 (1-60-전-8-10)	 (1-60-전-8-11)	 (1-60-전-10-2)
구분	六	曹	吏	任	書
B	 (1-60-전-6-9)	 (1-60-전-6-10)	 (1-60-전-8-10)	 (1-60-전-8-11)	 (1-60-전-10-2)
구분	京	外	西	以	常
A	 (1-60-전-2-3)	 (1-60-전-2-4)	 (1-60-전-2-6)	 (1-60-전-3-17)	 (1-60-전-5-10)
구분	京	外	西	以	常
B	 (1-60-전-2-3)	 (1-60-전-2-4)	 (1-60-전-2-6)	 (1-60-전-3-17)	 (1-60-전-5-10)
구분	并	員	臣	子	及
A	 (1-60-전-5-14)	 (1-60-전-7-5)	 (1-60-전-8-5)	 (1-60-전-8-6)	 (1-60-전-9-5)
구분	并	員	臣	子	及
B	 (1-60-전-5-14)	 (1-60-전-7-5)	 (1-60-전-8-5)	 (1-60-전-8-6)	 (1-60-전-9-5)

위의 <표 7>을 보면, 초주갑인자본의 본래 큰 자 활자(A)들은 활자 획이 분명하고 초주갑인자의 특징을 그대로 지녔다. 초주갑인자변각본의 큰 자 활자(B)들은 초주갑인자의 모양을 그대로 닮았지만 목판이어서 필사체의 느낌은 둔탁해졌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획(橫劃) 필법은 초주갑인자 큰 자 활자(A)들은 대소, 강약, 리듬감이 살아있는데, 초주갑인자변각본의 큰 자 활자(B)들은 대소, 강약, 리듬감이 없이 가로 일자형으로 뻗뻗하다.

둘째, 파임 필법은 초주갑인자는 큰 자 활자(A)들은 처음에는 가볍게 붓을 들어 시작하고 내려오면서 무겁게 운필하다 뻗쳐나갈 때 아주 부드러운데 비해 초주갑인자변각본의 큰 자 활자(B)들의 경우 시작점에서 그대로 내려와 운필하고 뻗쳐나갈 때 칼로 도각한 느낌이 나타난다.

셋째, 종획(努)의 갈고리 획은 초주갑인자 큰 자 활자(A)들은 아주 부드럽게 처리하고 있는데, 초주갑인자변각본의 큰 자 활자(B)들의 경우 칼로 도각한 느낌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5. 결 론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간행과 초주갑인자본 관련 초기 판본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의 조선 초기 법전은 태조 3년(1394) 5월 30일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이 가장 빠르다. 사찬이지만 각 분야의 제도를 기술하여 조선의 건국이념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원화성박물관이 소장한 『조선경국전』은 보물 제1924호로 1책 79장이며 현전하는 국내 유일본이다. 태조 6년(1397) 12월 조준의 『경제육전』, 태종 13년(1413) 하륜의 『경제육전속전』, 세종 11년(1429) 이직의 『신속육전』, 세종 15년(1433)의 『신찬경제속육전』이 편찬되었고, 이때마다 『육전등록』도 편찬되어 법전 편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때 편찬된 법전들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경국대전』의 편찬 배경은 세조가 선대왕들이 편간한 『원육전』, 『속육전』과 『육전등록』 및 왕이 내린 교지들이 있었는데, 법의 과와 조가 너무 많아 이를 조정하여 증감하고 회통하여 자손만대의 성법을 만들려고 한데서 시작되었다.

2) 『기축대전』은 세조대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편찬되는 과정을 거쳐 예종 1년(1469) 11월 16일에 반포된 『경국대전』의 초간본이다. 세조 1년(1455) 7월 5일과 세조 3년(1457) 3월 15일에 양성지의 건의가 있는 후 세조 3년(1457)에 육전상정소가 설치되었다. 세조 6년(1460) 7월 17일에 『경국대전』 「호전」을 반행하였고, 세조 7년(1461) 7월 9일 『경국대전』 「형전」을 반행하였으며, 세조 13년(1467) 12월 24일 『경국대전』 가운데 「호전」·「형전」을 인쇄하였고 세조 14년(1468) 정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 중 「호전」·「형전」 이외에 「이전」·「예전」·「병전」·「공전」에 대해서는 세조 13년(1467) 7월 29일 상정소의 당상이 새로 지은 대전의 초안을 바쳤다. 세조 14년(1468) 9월 8일 세조가 승하하여 『경국대전』의 반포와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종 1년(1469) 9월 27일 상정소

의 제조인 영성군 최항, 우의정 김국광 등이 『경국대전』을 지어 바쳤다. 예종 1년(1469) 11월 16일 예종 2년(1470) 정월 초 1일부터 『경국대전』을 준행하도록 하였지만, 예종이 1년(1469) 11월 28일에 승하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3) 『신묘대전』 및 『갑오대전』은 『기축대전』의 수정본이다. 『신묘대전』은 성종 1년(1470) 2월 9일 정창손,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심회, 조석문, 윤자운, 서거정, 양성지 등의 교정을 거치고, 성종 1년(1470) 4월 6일 새로 정한 『기축대전』을 이극돈, 최호원, 김유의 재교정을 거쳐서 성종 1년(1470) 10월 27일 최항 등이 다시 수정하였다. 성종 1년(1470) 11월 8일에 예조에 전지하여 성종 2년(1471) 정월 초하루부터 『신묘대전』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경국대전』의 제1차 수정본이다. 이 『신묘대전』은 보물 제1521호로 지정된 실물이 남아 있다. 『신묘대전』에 누락된 조문이 있어 다시 개수하기 시작하였다. 성종 2년(1471) 5월 25일 예조에서 『대전』의 조건에 실리지 아니한 130개, 조목을 열거하여 아뢰었고, 성종 4년(1473) 11월 4일에 수정이 이루어졌다. 성종 5년(1474) 1월 2일에는 『경국대전』을 개찬하여 중외에 반포하였는데, 『대전』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72조였는데, 『속록』이라 하였다. 이때에 반포된 『경국대전』과 『속록』이 『갑오대전』으로 『경국대전』의 제2차 수정본이며 성종 5년(1474) 2월 초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4) 『을사대전』은 『경국대전』의 완성본이다. 성종 12년(1481) 9월 17일에 시독관 김흔과 지사 서거정의 건의에 의해 『경국대전』의 주해와 재검토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감교청을 설치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성종 15년(1484) 6월 29일 승정원에 전교하여 감교청에서 『경국대전』의 교정을 마친 뒤에 의정부·육조와 재상들이 당부(當否)를 참고하게 한 것은 『속전』에 관련 된 것이므로 선왕께서 이미 시행하신 『경국대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못하게 하였다. 성종 15년(1484) 12월 4일 새로 교감한 『대전』은 성종 16년(1485) 정월 초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조선조 최종으로 확정된 완성본 『을사대전』이다.

5) 『을사대전』의 구성을 보면, 중국의 법전인 『주례』 육전의 형식에 따라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 29목, 「호전」 29목, 「예전」 61목, 「병전」 51목, 「형전」 28목, 「공전」 14목의 총 212목이다. 「이전」 29목은 조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행정조직인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면·사령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전」 29목은 나라의 경제와 관련된 경비, 호적, 토지 측량, 적전(籍田), 녹봉 등급, 여러 부류의 토지제도 및 재정과 정부물품 조달과 관련된 회계, 조세, 화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예전」 61목은 관리 임용에 관한 여러 종류의 과거제도, 관리들의 예복 규정, 성균관의 생도, 상복제도, 연향, 조회의식, 사대, 사신접대 등의 의식절차, 가정의례, 취재, 문서관리, 관리들의 장려, 해환, 선상 등의 규례에 관한 규정을 다루었다. 공문서 양식인 용문자식의 25식을 첨가하였다. 「병전」 51목은 군사와 관계된 군제, 무반직, 군역 의무, 국방과 관련된 교통과 통신, 궁궐의 보위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형전」 28목은 형사법에 근간이 되는 법체계이지만, 몇몇 헌법적 요소와 형사법규, 노비문제, 상속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전」 14목은 사회기간산업의 건설, 유지,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도로와 교량, 거마, 관사, 궁궐, 원우에

대한 관리 및 보수 규정과 과수 및 산림보호에 대한 규정, 각종 광물의 등록과 야장, 공장, 도량형 등에 관한 규정을 싣고 있다.

6) 초주갑인자본의 간행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문헌상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 교정청이 주도 하여 편찬하였고, 교서관 또는 주자소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을사대전』의 저본은 현재 성종 1년(1470) 11월에 인반하고 성종 2년(1471)에 정월부터 준행된 『신묘대전』의 판본의 형식인 ‘사주단변, 반곽 25.5 × 17.2 cm, 대자 10행17자, 주쌍행, 상하내향흑어미’의 형태사항과 같고, 초주갑인자 활자도 같다. 본문의 체제는 종과 횡으로 구분하여 예컨대 품계는 횡으로, 그 해당되는 사항은 종으로 기록하여 열람에 편하게 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주의 형식으로 2행 소자로 기재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을사대전』의 초주갑인자본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이 판본은 서문 제1장~제3장, 전(箋) 제1장~제3장, 목록 제1장~제3장이 보사되었고, 목록 제4장~제7장, 권1 본문 89장으로 되어 있다. 형태사항은 ‘사주단변, 반곽 25.0 × 17.6 cm, 大字 10行17字, 주쌍행, 상하내향흑어미, 31.9×21.0 cm’이다. 책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좀 닳아 있지만 본문의 인쇄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초주갑인자 활자의 큰 자는 세로와 가로의 크기가 매우 비슷해서 해서의 필력이 살아 있고, 파임에서는 해행서의 깔끔한 마무리가 일품이다. 둘째, 작은 자는 세로가 가로에 비해 약간 길어 보이는 작은 자이지만 글자체는 가늘기를 조정해서 균형이 살아 있다. 쌍행의 주 밑에 세주를 달기 위해 사용한 소자는 세로가 가로에 비해 두 배 정도 또는 그 이상 길어서 글자의 균형이 잘 맞질 않고 옆에 있는 글자와 겹쳐져 있다.

7)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권1-3이 남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古朝 33-26, 貴96)본은 권1-권3의 2책이다. 표지 이면에 ‘四二九四年十二月十八日楮紙製本時割本’이라 되어 있어 1961년 경국대전을 장정하면서 책의 위와 아래를 잘라 정연하게 했지만 실제로 훼손에 해당한다. 고서는 본래 ‘천두(天頭)’와 ‘지각(地脚)’을 넓게 하여 필요시 두주(頭註)와 각주(脚註) 등의 주석이나 구결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권수에 있는 ‘進經國大典箋’ 1장이 결장이다. 다음 장도 훼손이 심한데 책장 뒷부분에 종이를 덧대어 보수하였다. 어미는 上下內向黑魚尾(間混3葉花紋魚尾)여서 기본적으로 초주갑인자의 판식에 나타나는 흑어미에 중중~명중연간에 유행한 3엽화문어미가 섞여 나타난다. 인쇄면도 거칠어 보이는데 마멸된 활자들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종이가 얇고 오래 되어 그렇게 보인다.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의 마멸된 큰 자 활자들은 획이 가늘어지고 활자 획이 휘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너무 가늘어진 부분은 먹색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의 새로 주성된 큰 자 활자들은 가로획과 세로획이 길어지면서 밋밋해져서 글 자획의 필서체 느낌이 줄었다. 어떤 글자는 가로획이 길어져서 명정한 글자체의 흐름이 깨졌다.

8) 초주갑인자번각본은 성종 16년(1485)에 간행본을 저본으로 하여 성종 16년~성종 25년(1486-1494)에 간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본 『을사대전』 권1(고6025-59, 귀780)이 남아 있다. 간행기록이 없지만 인쇄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초주갑인자 활자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어 초기에

변각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표지는 개장되었는데 본래의 표지를 다음 장에 넣어 장정하였다. 권수에는 ‘光州金氏之印’의 먹색 인장이 찍힌 것으로 보아 광주김씨가에 소장되었다가 어느 시기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간 책으로 여겨진다. 앞에는 초주갑인자본과 똑같이 최항의 진전문이 있고, 이어서 서거정의 서문이 있다. 변각본이지만 사주단변의 선이 굵고 인쇄가 선명하고 먹색이 고르다. 천두와 지각에는 필사의 주석이 붙어 있다. 초주갑인자본의 큰 자 활자들은 초주갑인자의 모양을 그대로 닮았지만 목판이어서 필사체의 느낌은 둔탁해졌다. 특히 가로획(橫劃) 필법, 파임 필법, 중획(努)의 갈고리 획에서 뾰뚱하고 칼로 도각한 느낌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 羅用植. “朝鮮法典編纂에 관한 研究(上).” 『원광법학』 10(1988). 19-60.
- 신복룡.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해서 본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 『일감법학』 17(2010). 71-123.
- 양혜원. “『經國大典』 개정판본의 시행 단계 재검토 - 보물 제1521호 경국대전 간행년 판정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50(2017). 331-360.
- 윤국일 옮김. 『신편 경국대전』. 서울: 신서원, 2005.
- 李成茂. “《經國大典》의 編纂과 《大明律》.” 『역사학보』 125(1990). 85-106.
- 천혜봉 지음.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8.
-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 태조 1년(1392) 7월 28일(정미) 4번째 기사.
- 『태조실록(太祖實錄)』 5권, 태조 3년(1394) 5월 30일(무진) 1번째 기사.
- 『태조실록(太祖實錄)』 12권, 태조 6년(1397) 12월 26일(갑진) 1번째 기사.
- 『태종실록(太宗實錄)』 14권, 태종 7년(1407) 8월 18일(기해) 2번째 기사.
- 『태종실록(太宗實錄)』 23권, 태종 12년(1412) 4월 14일(무진) 2번째 기사.
- 『태종실록(太宗實錄)』 25권, 태종 13년(1413) 2월 30일(기묘) 3번째 기사.
- 『성종실록(成宗實錄)』 3권, 성종 1년(1470) 2월 9일(무오) 3번째 기사.
- 『성종실록(成宗實錄)』 3권, 성종 1년(1470) 2월 11일(경신) 2번째 기사.
- 『성종실록(成宗實錄)』 3권, 성종 1년(1470) 2월 14일(계해) 3번째 기사.
- 『성종실록(成宗實錄)』 4권, 성종 1년(1470) 4월 5일(계축) 7번째 기사.
- 『성종실록(成宗實錄)』 4권, 성종 1년(1470) 4월 6일(갑인) 2번째 기사.
- 『성종실록(成宗實錄)』 8권, 성종 1년(1470) 10월 27일(신미) 2번째 기사.
- 『성종실록(成宗實錄)』 8권, 성종 1년(1470) 11월 5일(기묘) 2번째 기사.
- 『성종실록(成宗實錄)』 8권, 성종 1년(1470) 11월 8일(임오) 3번째 기사.
- 『성종실록(成宗實錄)』 10권, 성종 2년(1471) 5월 25일 丁酉 12번째 기사.
- 『성종실록(成宗實錄)』 36권, 성종 4년(1473) 11월 14일(신축) 8번째 기사.

『성종실록(成宗實錄)』 38권, 성종 5년(1474) 1월 2일(무자) 4번째 기사.
『성종실록(成宗實錄)』 133권, 성종 12년(1481) 9월 17일(무자) 2번째 기사.
『성종실록(成宗實錄)』 147권, 성종 13년(1482) 10월 8일(계유) 2번째 기사.
『성종실록(成宗實錄)』 147권, 성종 13년(1482) 11월 9일(계묘) 2번째 기사.
『성종실록(成宗實錄)』 167권, 성종 15년(1484) 6월 29일(갑신) 1번째 기사.
『성종실록(成宗實錄)』 168권, 성종 15년(1484) 7월 3일(정해) 1번째 기사.
『성종실록(成宗實錄)』 173권, 성종 15년(1484) 12월 4일(정사) 3번째 기사.
『세종실록(世宗實錄)』 17권, 세종 4년(1422) 8월 11일(을미) 1번째 기사.
『세종실록(世宗實錄)』 31권, 세종 8년(1426) 2월 8일(임신) 4번째 기사.
『세종실록(世宗實錄)』 34권, 세종 8년(1426) 12월 3일(임술) 4번째 기사.
『세종실록(世宗實錄)』 42권, 세종 10년(1428) 11월 29일(정축) 2번째 기사.
『세종실록(世宗實錄)』 43권, 세종 11년(1429) 3월 18일(갑자) 4번째 기사.
『세종실록(世宗實錄)』 59권, 세종 15년(1433) 1월 4일(무오) 3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1권, 세조 1년(1455) 7월 5일(무인) 3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7권, 세조 3년(1457) 3월 15일(무인) 3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11권, 세조 4년(1458) 윤2월 24일(임오)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21권, 세조 6년(1460) 7월 17일(신묘) 2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23권, 세조 7년(1461) 2월 15일(병술) 2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24권, 세조 7년(1461) 5월 9일(무신)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25권, 세조 7년(1461) 7월 9일(정미) 2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2권, 세조 10년(1464) 2월 5일(무자)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36권, 세조 11년(1465) 5월 21일(정묘)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42권, 세조 13년(1467) 6월 24일(정사)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43권, 세조 13년(1467) 9월 8일(경오)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43권, 세조 13년(1467) 9월 26일(무자) 1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44권, 세조 13년(1467) 12월 21일(계축) 2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44권, 세조 13년(1467) 12월 24일(병진) 4번째 기사.
『세조실록(世祖實錄)』 47권, 세조 14년(1468) 11월 28일(갑신) 1번째 기사.
『예종실록(睿宗實錄)』 7권, 예종 1년(1469) 9월 27일(정미) 2번째 기사.
『예종실록(睿宗實錄)』 8권, 예종 1년(1469) 11월 16일(병신) 4번째 기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제육전(經濟六典), [검색일자 2018. 7. 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27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속육전(續六典), [검색일자 2018. 7. 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30437>>